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999. 4. 15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1999년 4월 1일 제출
- 회 부 : 1999년 4월 1일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고용직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용할 필요가 없어 조례의 계속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 폐지

5.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은 존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나,
- 상위법에 고용직 근거규정이 남아 있는 상태로 향후 장기적으로 고용직 임용과 관련한 정확한 예측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 개정시까지 존치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